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12. 1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5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조문 제목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현행 5년인 재산세 면제 기한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여 재산세 면제기한을 삭제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12년 7월 24일 시세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자치구세 감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예시안을 참고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시장현대화 시설물(아케이드)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다수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위하여 조성된 공익시설이며,
-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구 재정운용에 큰 영향이 없고, 대형마트에 비하여 시설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재산세 감면기한 삭제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참 고 자 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

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아케이트) 재산세 감면 현황

(감면액 기준 : 2012년)

시장명	위 치	소유자	연면적	점포수	설치 년도	감면 시작년도	감면 종료일	재산세	재산세 감면액
사 리 가 시 장 신영사라가시장	신길동 257-10	(주)사라가 (주)신영사라가	400.59m ²	57	2006년	2008년	2012년	100% 감면	430,420원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동2가 335	영등포구	5,959m ²	760	2011년	2013년	2017년	100% 감면	